

塩干 朴於屯과 独島

권 오 엽*

(e-mail : dongsana@hanmail.net)

目 次

- | | |
|--------------------|---------------|
| 1. 기록의 박어둔 | (3) 『竹島紀事』 |
| 2. 朝鮮記錄의 박어둔 | (4) 『元祿覺書』 |
| 1) 『肅宗實錄』의 박어둔 | (5) 『伯耆志』 |
| 2) 『疆界考』類의 박어둔 | 2) 岡嶋正義의 기록 |
| 3) 『邊例集要』의 박어둔 | (1) 『增補珍事錄』 |
| 4) 『蔚山府戶籍台帳』의 박어둔 | (2) 『因府年表』 |
| 3. 日本記錄의 朴於屯 | (3) 『因府年表大雜集』 |
| 1) 당대·당지의 기록 | (4) 『竹島考』 |
| (1)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 3) 『長生竹島記』 |
| (2) 『控帳』 · 『御用人日記』 | 4. 結論 |
-

1. 기록의 박어둔

박어둔과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 1693년 4월 18일에 일본어민들에게 납치당했다. 조선 몰래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며 가문의 번영을 이룬 오야케(大谷家)는 그것이 조선영토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그런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 막부가 쓰시마한(對馬藩)에, 조선인을 송환하며, 조선인의 죽도도해를 금해줄 것을 조선에 요구하라는 명을 내리자, 쓰시마한은 그것을 죽도탈취의 기회로 여기고 영토논쟁을 발발시켰으나,¹⁾ 막부가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하는 방법으로, 죽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를 인정하였다. 그 과정

* 충남대학교 교수

1) 일본자료를 인용할 때나 울릉도와 동의일 경우는 「죽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는 안용복의 공이 컸다. 그는 납치된 상황에서 죽도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주장했고, 송환된 후에는 쓰시마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선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같이 납치된 박어둔은 안용복과 병기되는 방법으로 소개된다. 대부분의 기록이 안용복 중심인 것은, 일본어 능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조선기록도 안용복 중심인 것을 보면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박어둔도 두 번 도해했는데 처음에만 안용복과 동행했다. 안용복이 박어둔을 구하려다 같이 납치된 동행이었는데, 3년 후에 따로 도해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없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둘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경우, 도해 목적이 달랐을 경우, 수행하는 역할이 달랐을 경우 등이다.

독도문제에서 안용복의 실체규명이 필요한 것은, 일본이 안용복의 신분과 범법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선의 기록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에도(江戸)에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사실, 쓰시마한이 비리를 범한다는 사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왜인을 추방한 사실 등을 진술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안용복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자료가 있으면, 일본주장의 허구가 저절로 밝혀지겠지만, 현재 그런 자료는 없다. 그러나 해독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안용복이나 박어둔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박어둔의 기록이 부수적이고 많지 않지만,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박어둔의 실체는 물론, 안용복의 실체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박어둔의 실체나 행적은 한일 양국 기록에 산견되는데, 일본기록이 전하는 호패와 안용복의 구술, 그리고 울산부호적대장 등이 보다 구체적이다. 그것들을 종합분석하면 박어둔은 물론 안용복의 실체에도 좀 더 가까이 접근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독도문제의 본질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호적대장의 그는 「병영염간」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소지한 호패의 내용과 같다. 안용복이 진술했다는 구술서는, 박어둔을 안용복의 「하인」에 위치시켰으나, 그의 선조들은 「통정대부」, 「가선대부」 등의 관직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수궁할 내용은 아니다.

「병영염간」이라는 직책을, 그가 소옥을 지키다 납치당했다는 사실과 연계시키면, 동료들이 어렵하는 시간에 홀로 소옥에 남은 이유는 물론, 1696년에 안용복 일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추정 가능하다. 박어둔의 호패 내용은, 안용복의 구술서나 울산부호적대장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런데 안용복의 것이라는 호패는, 같이 기재된 구술서의 내용과도 달라, 호패에 근거하여 안용복을 규정하는 일은 위험하다 할 것이다. 일본은 호패의 내용을 근거로 안용복이 칭

한 「비장」 · 「동지」 · 「통정대부」 등의 관명을 부정하며, 허구에 능한 자의 관명참침으로 단정하나, 박어둔의 선조들이 「통정대부」 등의 관직을 칭한 사실을 생각하면, 안용복에게는 그런 관명을 칭한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안용복을 사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납치당하는 박어둔을 구하려다 납치당한 사실, 박어둔을 안용복의 「하인」에 위치시킨 사실 등을 보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임에 틀림 없다. 안용복에게는 여러 관명이 전하는 것과 달리, 박어둔에게는 「병영염간」만이 전한다.

박어둔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그것도 안용복과 병기되는 경우가 많아, 독도를 논하는 경우에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용복의 부정을 통해, 조선의 독도인식을 부정하는 일본의 논리가 존재하는 한, 박어둔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안용복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다.

2. 朝鮮記錄의 박어둔

박어둔의 행적은 조선의 『숙종실록』을 비롯하여 『강계고』 · 『증보문헌비고』 · 『만기요람』 등이 전하고 있으나, 『강계고』 · 『증보문헌비고』 · 『만기요람』의 내용은 유사하여, 『숙종실록』과 『강계고』류로 구별할 수 있다. 또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도 유사한 내용을 전하나, 안용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박어둔은 언급하지 않는다. 『변례집요』는 납치를 면한 어민들과 박어둔이 진술한 내용을 전하는데, 일본의 『백기지』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박어둔의 출생과 계보 까지 기록한 『울산부호적대장』이 있다.

1) 『숙종실록』의 박어둔

조선기록에 박어둔이 나타나는 것은, 쓰시마한이 납치했던 조선인을 송환하며, 조선인의 죽도 도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부터였다

계유년(1693) 봄 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 배를 댔는데, 마침 왜선이 도착하여 박어둔 안용복 2인을 붙잡아 갔다. 그 겨울에 이르러 대마도가 정관 다치바나 마사시게(橋真重)를 시켜 박어둔 등을 영송하면서 죽도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²⁾

²⁾ 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余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通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及其冬 對馬島使正官橋真重 領送於屯等 仍請禁我人之於採於竹島者(『肅宗實錄』 20年2月23日).

4월에 죽도(울릉도)에서 납치한 조선인을 12월에 양도하며, 조선어민의 죽도 도해금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둘을 울산인으로 하고 있으나 쓰시마한은 울산의 박어둔과 부산의 안용복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납치의 범법은 언급하지 않고, 도해의 범법과 송환하는 일본의 인도적 처사를 강조한 서신이었다.³⁾

조선은 「일본의 죽도」, 「조선의 울릉도」라는 논리로 대응하다 울릉도를 탈취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접위관 유집일은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일본에 글을 보내어 안용복 등을 침책한 사실을 갖추어 말하면 여러 섬들이 어찌 무사하겠는가」⁴⁾라는 식으로 대처하여, 회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정보의 신뢰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안용복을 부정하려 했다.⁵⁾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박어둔이 거명되는 일은 없었다.

박어둔은 「박어둔·안용복」(숙종19년11월18일), 「조선인」·「죄어인」·「범인」·「인」(숙종20년2월23일), 「안용복·박어둔」(숙종20년8월13일), 「아인」(숙종20년8월14일) 등과 같이 안용복과 병기되고 있었다.⁶⁾

2) 『강계고』류의 박어둔

『강계고』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 이래의 조선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1693년에 쓰시마한이 조선인을 송환하면서 보낸 서계를 소개했다.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서 뒤섞여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토관이 그 어민 2명<안용복 박어둔>을 억류하여, 주사에 볼모로 잡아두고, 일시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중략) 2명의 어민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⁷⁾

서계는 박어둔과 안용복을 「貴域漁氓」·「漁氓四十余口」 등의 표현에 포함시키고, 둘을 의미할 때는 「漂民二口」·「漁氓二人」으로 표기하여, 「漁氓

3) 其書曰 貴域瀕海漁氓 比年行舟本國竹島 土官詳諭國禁 固告不可再 而令春漁氓四十余口入竹島雖然漁採 土官拘其二人 為一時証質 本國因幡州牧 馳啓東都 令漁氓附與弊邑 以還故土 自令以後 決莫容船於彼島 弥存禁制使 兩國交誼 不生齟齬(『肅宗實錄』 20年2月23日).

4) 乃喝倭差曰我國將移書于日本備言侵責龍福等之狀諸島安得無事倭差相顧失色邑始折服(『肅宗實錄』 20年8月13日).

5) 推問安龍福 以為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 馬島人劫奪(『肅宗實錄』 22年10月23日).

6) 倭請以犯境之罪罪漁人(肅宗19年11月18日),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중략)法堂痛懲令將犯人等 (중략) 治泊鬱陵島人 或刑 訊或編配(중략)如犯人等科罪之語(중략)朝鮮人入於吾竹島(肅宗20年2月23日). 反拘執我人轉到江戶(肅宗20年8月14日)

7) 漁氓四十余口 入竹島雖然漁採 由是土官拘留其漁氓二人<安龍福·朴於屯> 為質於州司 以為一時之証(中略) 二氓 得還故土也(『疆界考』 鬱陵島·安龍福事).

二人」이 안용복과 박어둔이라고 분주를 달았다. 여기서도 박어둔은 안용복과 같이 억류된 「어맹」으로 소개될 뿐이다. 「안용복사」라는 장을 설정하여 안용복을 설명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증보문헌비고』나 『만기요람』은 『강계고』와 용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성호사설』은 안용복을

나는 생각하건대, 안용복은 곧 영웅호걸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만 번의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강적과 겨루어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부개자와 진탕에 비하여 그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니 영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⁸⁾

라고 중국전적의 인물과 비교하여 칭송하면서도 박어둔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박어둔은 회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오주연문장전산고』도 마찬가지였다.

3) 『변례집요』의 박어둔

1694년 정월과 8월조에 납치기록이 있는데, 전자는 박어둔의 진술이고, 후자는 동료 선원들의 진술이다. 정월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술년 정월에 죽도에서 붙잡힌 울산에 사는 박어둔과 안용복에게 문목을 만들어 문초하니, 박어둔이 (중략) 표풍으로 소위 죽도라는 곳에 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도에서 호키슈까지의 거리는, 제가 본도에 머문지 3일째 되는 날 왜인 7, 8명이 승선한 배가 불의에 도래하여, 우리를 붙잡아, 그 섬을 출선하여 3주 4야 후에 호키슈에 이르렀다.⁹⁾

안용복과 박어둔이 같이 심문받고, 박어둔이 진술한 내용이다. 일본과 달리 언어의 불편이 없는 경상감영의 심문이라, 박어둔이 답한 것 같다. 납치당한 둘이 4일 만에 호키슈에 도착했다는 일정은, 4월 18일에 납치당하여 28일에 요나고에 도착했다는 일본의 기록과 다르다. 20일에 오키의 후쿠우라에 도착하여 23일에 그곳을 떠난 일정과 비슷하다. 갑자기 나타난 7, 8명에게 납치되었다는 상황은 「전마선에 7, 8인이 타고」 박어둔을 납치하려 했다는 『죽도기사』의 내

8) 愚案安龍福直是英雄偉匹 以一卒之賤出万死之計 為國家 抗強敵 折奸萌 息累世之爭 復一州之土 比諸傳介子陳湯 其事尤難 非傑然者不能也(『星湖僊說』鬱陵島條).

9) 甲戌正月,竹島被捉罪人蔚山居朴於屯,安龍福處,發問目推問,則朴於屯招內(중략)漂風到泊於所謂竹島,而竹島至於伯耆州遠近事段,矣身留駐本島第三日,倭人七八名,不意中乘船來到,執捉矣身仍自其島,發船徑三晝四夜之後,始達伯耆州(『邊例集要』卷17、鬱陵島, 1964年 正月).

용과 일치한다.

납치를 모면한 박어둔의 동료들이 진술한 납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박어둔 · 안용복 · 김가을동 · 김자신 · 서화립 · 이환 · 양담사리 · 김덕생 등이 무릉도에 표착했는데, 그 중에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왜인에게 붙잡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쳐 돌아왔다. 그들을 불러들였다. 무릉도에 표착한 김덕생 등 6인은 땅에 내려 숨었다. 박어둔과 둘이 아직 하선하기 전에 왜인 8명이 탄 배가 홀연히 도래하여 칼과 조총으로 위협하여 두 사람을 붙잡아갔다.¹⁰⁾

경상감영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박어둔과 안용복이 납치당한 상황만이 아니라, 납치를 면한 동료들의 상황도 알 수 있다. 갑자기 나타난 왜인 7, 8인이 칼과 조총으로 위협하며 둘을 납치하는 동안에, 동료들이 도망쳤다는 것으로, 납치당하는 박어둔을 구출하려 했던 안용복과는 다른 자세였다.

원래의 일행은 10인이었으나 죽도에 도해한 것은 9명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동료 하나를 도중에 하선시켰기 때문이다.¹¹⁾ 그런데 『변례집요』는 8인을 열거하고, 김덕생 등 6인은 도망치고 나머지 2인이 납치당한 것으로 하여, 8인의 일행으로 했다. 한편 『죽도기사』는 1인이 도중에 하선하고 9인이 도해한 것으로 하여 『변례집요』의 8인과는 다르다. 9인의 『죽도기사』가 8인의 『변례집요』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8인으로 기록한 원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4) 『蔚山府戶籍台帳』의 박어둔

『울산부호적대장』이 전하는 박어둔의 호적은 다음과 같다.

제5신호, 대대면에서 청양면 목도리로 이주해 왔다. 병영의 염간으로 해척에 속하는 박어둔은 신축생 27세로, 본은 경주, 부는 정병의 기산이다. 조부는 통정대부의 국생이다. 증조부는 가선대부의 잉질석이다. 외조부는 정노위의 운수금으로 본은 파평이다. 처는 사비 천시금으로 병오생 22세이고 본은 울산이다. 처의 상전은 서울에 사는 전 감사 정선이고, 부는 사노 천학, 조부는 산이,

10) 朴於屯安龍福金加乙洞金自信徐花立李還梁淡沙里金德生等漂到武陵島而其中安龍福朴於屯二人被捉於倭人其余各人逃還各各取招則矣等漂到武陵島金德生等六人下陸隱匿朴於屯二人未及下船之前倭人八名乘船忽到以刀鋸鳥銃威協兩人執捉以去事(『邊例集要』卷17、鬱陵島, 1964年8月).

11) 船壹艘二十人乘組寧海与申所迄罷越候處右拾人之內壹人ハ相煩申ニ付寧海江殘置九人乘組右之竹嶋江罷越申候(『竹島紀事』元祿6年6月).

사노 천학을 부로 했다. 증조부는 부지. 외조부는 김해, 본은 울산, 모는 사비의 복춘이다.¹²⁾

박어둔의 외가의 가계까지 기록한 것으로, 그의 실체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죽도고』의 호패와 비교한 이준구는, 박어질둔을 「박엇둔」으로 읽고, 「호적(1687년)의 나이(27세 신축생)와 호패(1690년)의 나이(30세 신축생)가 일치」한다며, 『죽도고』의 박어둔과 동일인으로 보았다. 호적의 박어둔은 증조부 가선대부 朴苐叱石, 조부 통정대부 박국생, 부 정병 박기산의 가계를 이은 병영염간으로, 정로위 윤수금을 외조부로 한다. 일정한 역직을 칭한 외가를 가진 가계였던 것에 비해, 처 千時今 은 부지의 증조부, 조부 천산이, 사노 천학을 부로 하는 사비였다. 외가를 소개하면서 모친의 설명은 없다.

이준구는 박어둔의 4조의 직역인 정병(부)·통정대부(조)·가선대부(증조)·, 정로위(외조)를, 정병은 상민의 역명, 통정대부와 가선대부는 납속이나 노직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았지만 일반 상민의 납속 또는 노직계로 보고, 정로위는 諸色軍士 중 有序·有蔭과 동류의 병종으로 보았다. 4조가 칭한 관명을 상민층도 가질 수 있는 직역으로 본 것이다.

박어둔의 처는 서울에 거주하는 전 감사 정선의 외거노비 천시금으로, 부모 역시 사노비였다. 조·증조·외조의 신분기록은 없다. 그러면서 증조부는 「부지」로 기록했다. 이준구는 그것을 「조상의 이름자도 알지 못하는 천하고 무식한 처지」라 했고, 천인 천시금과의 혼인은 「양천교혼」이라 했다.

이 호적을 확인한 오니시 토시테루는 출생지와 「병영염간」이라는 역직에 관심을 표했다. 박어둔의 거주지로 소개된 「제5신호」의 신호가, 태화강 하구의 삼각주에 있는 청량도의 집락(청량면 목도리 제12통 5가)이라면 이전의 거주지 다대는 어디일까 라는 의문과 「병영염간」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었다.

호적의 「제5신호 大代來」는, 박어둔의 거주지가 청량면 목도리에 새로 조성된 집락으로, 전에는 「대대」에 거주하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大代」의 위치가 문제이나, 울산부에는 「大福里」·「大谷里」·「大亭里」·「大垈里」등 「大」가 붙는 리가 많다. 「大代里」가 「大垈里」라면 산중의 「熊村面 大垈里」로 추정할 수도 있다.

신분을 설명하는 「兵營塩干海尺」은 안용복이 경상좌도 수군의 노군이었던

12) 第五新戸大代來兵營塩干良海尺朴於叱屯年貳拾柒辛丑本慶州父正兵己山祖通政大夫國生曾祖嘉善大夫苐叱石外祖定虜衛尹守令本坡平妻私婢千時今年貳拾貳丙午本蔚山上典京居前監司鄭先父私奴千鶴祖山伊曾祖不知外祖金海本蔚山母私婢卜春(『蔚山府戶籍大帳』1687年, 肅宗13年, 奎章閣圖書 14999-1, 蔚山府靑良面目島里16統5戶. 李俊九「17世紀末, 戶牌·戶籍이 말하는 蔚陵島·独島의 과수꾼 安龍福과 朴於屯」, 『朝鮮史研究』第14輯, P.75).

것처럼, 박어둔도 수군의 「軍食」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염호라고도 하는 「염간」은 양인 신분이나 身良役賤 계층이다. 고려 충선왕 이래 국가의 소금 전매제의 일환으로 강제 동원된 염호들이 세습적으로 천역을 부담하게 된 것이 기원으로, 염업의 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며 정액의 염세를 납부했다. 규정된 소금을 납부하고 남은 소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염간에게 시집간 婢의 소생은 부의 役處에 定役하고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1419년의 대마도정벌에 염간이 군사로 동원된 일이 있다.

이런 염간의 의미를 감안하면 박어둔의 역할은 軍食 담당으로, 식량을 장기 보존하는 염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전거로 하면, 그가 울릉도에서 수행한 역할은 해상의 어로보다 육지에 남아 어획물을 처리 보관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납치될 때 홀로 소옥에 남아있었다는 사실과도 잘 부합하는 역학이다.

박어둔은 「양해척」, 즉 해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해척」이었으나, 산촌 다대에서 울산부 청량면 목도리의 신호에 이주했다는 것은, 그가 원래부터 해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어둔을 임해가 아닌 산촌출신의 해척으로 추정한 오니시는

산중에서 임해로 나온 박어둔은 생활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원양 항해에 나가게 된다. 즉 일을 찾아 도회에 나가, 새로운 개척지 해변으로 이주했으나 신규 입식자여서 농지가 없고, 연해어업에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있어 일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양의 항해, 금지된 울릉도에 건너가 어로에 종사한 것이다.¹³⁾

라고 죽도에 도해하는 원인을 추정했다. 산촌 출신이 해변으로 이주한 사실과 염간이라는 직역, 홀로 소옥을 지키다 납치된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 가능한 추정이다. 산촌출신의 「양해척」으로 「병영염간」의 경력을 가진 그는 해상 작업보다는 어획물을 보관하는 소옥에 남아 동료들의 어획물을 처리하다 납치당

13) 大代から来て、新戸籍を作ったという箇所ですが、この大代は、どこでしょう。最初は東萊府の中かと思っただけですが、どうもこれは蔚山府の中なのかとも思い始めました。蔚山府の中には、大福里、大谷里、大亭里、大安里、大垓里など、大の文字の付く里がかなりありますね。大代里は、この大垓里のこと、すなわち熊村面の大垓里の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중략)そちらの五万分の1の地形図を見れば、蔚山府内の大代里は同定さ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大代という地名があるかどうかです。蔚山郡で調べ、東萊で調べ、そして慶州の出自とありますから、慶州周辺の地名を地図で確認し、蔚山に無い、慶州に無い、東萊に無い、となれば、改めて、この大代里が大垓里であることが、傍証として成立します(2009年8月23日の 메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日本記録의 朴於屯

일본의 기록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것들은 당지·당대의 기록과 후대의 기록으로 구분할 수도, 납치에 관여한 당사자와 후대인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기록이 시대를 달리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가진다.

1) 당대·당지의 기록

(1) 『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

박어둔과 안용복을 납치한 것이 오야케의 어민들이었으므로, 맨 먼저 심문한 것도 그들이었다. 납치하여 후쿠우라에 도착하자, 오키 번소는 쇼야(庄屋)들을 입회시키고 구상서를 작성했는데, 오야케 선원들은 이미 심문을 마쳤기 때문인지 임석 자체를 거부했다.¹⁴⁾ 가문의 이익을 위해 납치한 이상 그것의 정통성을 위한 심문을, 납치하여 귀범하는 선상에서 이미 시작했기 마련이다.

죽도도해를 독점하여 부와 영예를 구축한 오야케는 조선인의 납치를 통해 죽도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강화하려 했다. 죽도도해의 정통성을 기록한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은 가문이 쇠락한 원인을 조선인의 납치에서 찾으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극히 간단하다. 납치당한 자들의 진술이 자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조선인에 대한 뚱토리한(鳥取藩)과 막부의 대응이 기대와 달리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생략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선인의 에도행은 전한다. 이 에도행은, 관백한테 받은 서계를 쓰시마에서 탈취당했다는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은 납치를 약속하며,

즉시 뚱토리후(府)에서 조사하고 조선인을 에도에 인도했다. 에도에서도 즉시 조사하고, 순서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여 돌아가게 했다. 첨부, 잡아온 조선인의 이름은 아히찬과 도라에이였다

則鳥府表御吟味之上 唐人江府江御引渡 則江戸表御穿鑿 相濟順々御贈歸ト成ル。別記有之故略ス。附リ、連歸唐人名アヒチャン・トラエイ¹⁵⁾

14) 隠岐国福浦江同廿日二参着仕候、然所、於隠岐御番所私共被召出、口上書上グ候様被仰付候故、私共申候ハ、即唐人居申候間、御直ニ御聞被遊候様申上候へは、尤之由被成御意、唐人被召出様子御聞被成、其上二て所之庄屋共出合、唐人之口上書上グ申候 (『因府年表大雑集』大谷九右衛門船頭口上書) .

라고 안용복이 에도에서 서계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다. 이곳의 「御贈」은 송환하기 전의 일로, 송환한다는 「歸」로 이어진다. 당시의 조선과 일본은 상대국의 표류민을 송환할 때는 일정한 물품을 하사하고 있었는데, 이곳의 「어증」은 송환하는 안용복에게 관백의 서계를 포함한 물품을 준 사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666년에 부산에 표착했다 돌아간 일본인에 대한 기록이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에 있다.

조선국 곳곳에서 대접을 받고 순조롭게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때 조선국왕이 선장과 선원에게 준 전별목록 두 통이 있습니다.

則朝鮮國所々ニ而御馳走 順々ニ送歸シ相成事 具別記有之略ス 尤朝鮮國王ヨリ船頭水主江餞別目錄二通有之 于今致所持。¹⁵⁾

표착한 일본인을 조사하며 곳곳에서 후대하고, 송환할 때는 조선국왕이 물품과 전별목록을 하사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조선 곳곳에서 대접을 받고」는 박어둔과 안용복이 요나고·돗토리·에도·나가사키·쓰시마·왜관을 전전한 사실과 대응하고, 「조선국왕이 선장과 선원에게 준 전별목록 두 통」은 「절차에 따라 물건을 주어 귀국하게 했습니다」와 대응한다.

두 기록이 공유하는 「順々」은 조선인에게 무엇을 주어 송환시켰다는 「御贈歸」와 일본 어민을 송환시키며 물품과 전별목록을 주었다는 「餞別目錄」으로 이어져, 송환 이전에 물품을 하사했다는 것이 된다. 전자는 무엇인가를 「증」하여 「귀」하게 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송귀」하기 전에 「전별목록」을 주었다는 것으로, 물품을 하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용복과 박어둔도 송환되기 전에 물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조선국왕이 일본 어민에게 전별목록을 하사한 것처럼, 관백도 두 사람에게 서계를 포함하는 물품을 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용복이 관백한테 받은 서계를 쓰시마에서 탈취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한다.

(2) 『控帳』 · 『御用人日記』

돗토리한 가로의 기록 『히카에초』에 박어둔을 포함하는 조선인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1693년 4월 28일조의 기록부터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죽도에 전복을 잡으러 가는 배가 도해했는데, 그 섬에

15)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21.

16) 『拔書控』本文11.

조선인이 있어, 어렵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며 조선인 둘을 배에 태워 왔다.¹⁷⁾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당인2인」으로 표현했는데, 그 해에 납치된 자가 박어둔과 안용복이었으므로 「당인2인」에는 박어둔이 포함된다. 납치보고를 받은 돛토리한은 7일 비각으로 막부에 보고하고 두 사람을 오야케에 유폐시켰다. 조선인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은 5월 11일로, 그들의 외출을 불허하며 음주를 허가했다는 기록에 「당인 안비잔」이라는 표기가 있다.¹⁸⁾ 외출과 음주를 요구했으나, 외출은 허가하지 않고 술은 1일 3승으로 제한했다. 이곳에 박어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불만을 표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이 안용복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술에 관한 기록은 후쿠우라(福浦)에서 구상서를 작성한 후에 「조선인에게 술통을 보냈다」라는 것도 있다.¹⁹⁾ 그것을 근거로 「오야케 선두들에게, 일본령 죽도를 침범하여 증인 취급을 받은 두 사람은, 일본에 도착하여 죄인이 아닌 이객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옳은 의견이 아니다.

물론 나가사키(長崎)로 이송될 때 「이즙칠팔채(一汁七八采)」의 대접받은 것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후쿠우라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은 납치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의 일이었다. 조선인의 납치는 예삿일이 아니라 납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조선인이 원하는 진술을 거부하며 납치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진술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술을 보낸다는 것은 저항하는 조선인의 회유였을 수도, 고문한 것에 대한 위로였을 수도 있다.

이것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 돛토리한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다.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송환하라는 막부의 명을 받은 돛토리한은 둘을 소환하며 다음과 같은 경계령을 내렸다.

이번에 조선인이 요나고에서 올 때, 또는 돛토리를 출발할 때에, 가신과 여러 사람들이 구경한다 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엄중히 일렀다. 그 중에서도 부인이나 아이들은 구경하러 외출해서는 안 된다. 조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잘 이해하고 여러 사람에게도 이 뜻을 알리도록 할 것.²⁰⁾

17) 例年竹嶋江鮑取ニ參候船渡海候処、被嶋ニ唐人居申候付て、獵不罷成戻り候付、唐人式人船ニ乗せ參候由(權五曄『控帳』, 冊舎廊, 2010, P72, 元禄6年4月28日).

18) 米子唐人あんびじゃん、気晴ニ出可申由、色々わやく申候由、修理迄申来候へ共、外江出候儀不通ニ無用と差図申事。且又酒給申度由申候へ共、是又昼夜ニ三升より上は無用之由申達事(『控帳』, 前掲注17, P77, 元禄6年5月11日).

19) 其後御番所より唐人江酒模被遣候(『因府歴年大雑集』大谷九右衛門船頭口上書).

연행된 조선인 중에 난폭한 자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돗토리한이, 그 때까지 둘을 경험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간접정보에 근거하는 경고였다. 그것은 실체를 반영한 경고였다기보다는, 납치하여 심문한 요나고 어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치의 부당함을 거론하며 항의하는 조선인을, 납치를 자행한 요나고 어민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는 것은, 조선인을 경험하고 기록한 『히카에초』 등에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에도에 체재하는 한슈(藩主)는 비각으로 보고받으며 지시하고 있었다. 돗토리에서 에도 번저에 보고하면, 번저가 막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납치사건도 요나고 어민이 요나고 성주에게, 성주가 돗토리한의 가로에게, 가로가 에도 번저에, 번저의 어용인이 막부의 노중에게 보고하는 절차였다. 막부의 지시는 그 역으로, 에도번저, 돗토리한, 요나고성을 통해 어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한을 통하는 공식 통로였으나, 요나고 어민들은 막부의 권력자와 직접 연락하는 사적 통로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고 어민들의 도해는 돗토리한이 아닌 막신 아베 시로고로케(阿部四郎五郎家)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어용인일기』에 박어둔이 나타나는 것은 돗토리한의 보고에 근거하는 것으로, 5월9일의 기록부터였다. 4월 28일부의 보고가 5월 9일에 에도 번저에 도착하자, 번저는 10일에 막부에 보고할 계획을 세워, 13일에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동안 둘은 거명되는 일 없이 「其内式人」·「朝鮮人内式人」·「通詞壺人外一人以上兩人」등으로 표기되었다.²⁰⁾ 그리고 「式人」을 「通詞壺人外一人」으로 설명했는데, 「통사」가 안용복을 의미하므로 「외일인」이 박어둔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진술서의 존재를 명시하면서도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둘을 「通詞壺人外一人」으로 구별하여, 둘 중의 하나가 왜어에 능하다는 설명으로, 안용복을 간접 설명한 것에 비해, 「외일인」으로 표기된 박어둔은 「양인」의 구성원으로 설명되었을 뿐이다.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안용복이 둘을 대표하여, 납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20) 朝鮮人米子より参候節、見物猥無之様ニと御家中へ相触候趣、如左。今度朝鮮人米子より参候節、又ハ此元発足之節、家来末々見物罷出候とも、猥無之様堅可被申付候。其内女わらんべ見物罷出儀は可為無用、朝鮮人狼藉も可致様子相聞候間、被得其意、組中へも此旨可被申渡候(『控帳』, 전개주17, P105, 元禄6年5月28日).

21) 彼嶋ニ朝鮮人獵仕罷有付て、其内式人舟乗罷歸候由申来、朝鮮人口上書(5월9일), 今度竹島江参候朝鮮人之内式人(중략) 然処、彼唐人長崎江被遣、御奉行所江相渡(5월 13일), 彼朝鮮人之内、通詞壺人外壺人以上兩人、同船ニ手米子へ罷歸候(중략)被朝鮮人長崎江被遣(5월15일)(権静『御用人日記』, 천인, 2010, 元禄6年).

항거했던 것에 비해, 박어둔이 침묵하며 일본의 처사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안용복은 「통사」·「狼籍」 등으로 수식되는 것에 비해 박어둔을 수식하는 표현이 없고, 조선에 송환된 후에도 특별한 행동을 취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안용복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것은 추정 가능한 일이다.

(3) 『竹島紀事』

『죽도기사』는 1725년에 쓰시마한시(對馬藩士) 고시 쓰네에몬(越常右衛門)이 편집한 것으로, 조선인의 송환을 명받은 쓰시마한이, 박어둔과 안용복을 송환하며 조선인의 죽도 도해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영토분쟁을 발발시켰다. 그 과정에 쓰시마한과 조선이 교환한 서간을 비롯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여, 박어둔과 안용복의 실체만이 아니라, 영토분쟁의 본질에도 접할 수 있다.

박어둔이 기록되는 것은 쓰시마한의 에도번저의 가신 스즈키 한베에(鈴木半兵衛)가, 나가사키에서 조선인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부터였다.²²⁾ 명받은 쓰시마한은 부산의 왜관에 문의하여, 죽도의 역사·지리적 인식을 정리하면서, 둘을 「이인」·「조선인」·「표류인」 등으로 표기했다. 성명이 표기되는 것은, 6월 30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한 둘을 쓰시마한의 하마다 겐베에(濱田源兵衛)가 양도받으며 작성한 구상서부터였다.

조선국 경상도내 동래군 부산포의 안요쿠호키, 울산의 박토라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울산이라는 곳에서 죽도라는 곳으로 전복, 미역을 따라 3월11일에 출발하여 동 25일에 영해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을 동 27일 진시에 출발하여 유시에 죽도에 도착했습니다.²³⁾

라고 두 사람이 부산포의 「안요쿠호키」와 울산의 「박토라히」, 즉 안용복과 박어둔이라고 명기했다. 기록은 두 사람이 4월 17일에 죽도(울릉도)에서 남치되어 5월 1일에 돛토리에 도착한 것으로 하여, 도해 목적이 어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도해한 것은 17인승의 전라도선, 15인승의 부산선, 10인승의 경상도선으로, 도합 3척이었는데 박어둔이 탔던 배에는 10인이 승선했으나, 한 사람이 도중에 내려 9인이 도해했다.²⁴⁾ 그리고 두 사람을,

22) 朝鮮人四拾人程罷越、漁いたし候故其内式人召捕置 公儀江及御案内候ニ付、則長崎奉行所江送届對州江被相届候様ニ被仰出候、委細長崎奉行所より可申參候間 (『竹島紀事』元祿6年5月13日) .

23) 朝鮮國慶尚道之内東萊之郡釜山浦之安ヨクホキ蔚山之朴トラヒ与申者ニ而御座候、我儀蔚山与申所より竹嶋与申所江炮若布抹ニ三月十一日ニ出帆仕、同廿五日ニ寧海与申所ニ參着仕、其所を同廿七日辰之刻ニ出帆仕西之刻竹嶋江參着仕 (『竹島紀事』元祿6年6月) .

24) 前掲注11, 我々乗船類船共ニ三艘之内一艘ハ全羅道之船与承及申候、則人数十七人乗同壹艘

박토라히 34세, 안요쿠호키 40세 입니다. 그러나 이나바에서는 43세라고 말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말이 정확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²⁵⁾

라고 설명했다. 박어둔이 34세이고 안용복이 40세임을 밝히며, 안용복이 돗토리에서 43세라고 진술한 것은 언어상의 오류였다고, 40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박어둔을 먼저 언급했다. 「釜山浦之者壹人」, 「蔚山之者壹人」으로 기록되는 둘은 돗토리한에서 받은 물품을²⁶⁾ 소지하고 있었다.²⁷⁾

둘은 9월 3일에 쓰시마로 이송되어 4일에 심문 받았다. 쓰시마한은 둘을 「부산 사람 안요구」와 「울산 사람 바쿠토라비」로 명기하고, 승조원 10인의 내역을 소개하며, 한 사람이 도중에 하선한 사실도 기록했다. 명단은 선두 기무요차키·긴바타이·긴텐토이, 울산인 세코치·이하니·기무토구조이·차구차춘 등 7인이거나,²⁸⁾ 여기에 안용복과 박어둔, 그리고 하선한 자를 합하면 10인이다. 10인 중 9인이 울산 사람이고 1인이 부산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고, 안용복이 부산 사람이었으므로 도중에 하선한 자는 울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선두가 1인인가, 아니면 3인가이다. 또 3인을 「울산 사람」이라고 특기한 의미도 불분명하다. 안용복을 제외하고 모두가 울산 사람인데 「세코치」 앞에 「울산 사람」이라고 기록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그 아래에 기록한 「선두」를 포함하는 7인 모두를 수식하여, 7인과 박어둔, 도중에 하선한 자 모두가 울산 사람이고 안용복만이 울산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을지도 모른다.

15항으로 구성된 구상서에는 납치상황을 설명한 내용도 있다.

우리들이 그 섬에 있을 때 소옥을 짓고 소옥의 당번으로 하쿠토라히라는 자를 남겨 두었다. 그곳에 4월 17일에 일본선 1척이 와서, 거룻배에 7, 8인이

者十五人乘慶尚道之内加徳与申所之者与承及申候(『竹島紀事』元禄6年6月).

25) 朴トラヒ歳三拾四、安ヨクホキ歳四拾ニ罷成候、然所ニ因幡ニ而歳四拾三与申上候由ニ御座候得共是又言葉耽与通シ不申候故相違も可有御座哉与奉存候御事(『竹島紀事』元禄6年6月).

26) 木札 2개는 타 기록이 kf하는 안용복과 박어둔의 号牌로 추정된다.

27) 布帷子七・湯かた壺・風呂敷式・鏡壺面・唐笠壺本・布手拭三ツ・煙器壺本・皮多葉粉入式・布帶壺筋・木綿布子壺・布足袋式足・かや壺張・右者從伯者守様朝鮮人ニ被下之候分。木綿給五・布帷子四・まんきん式・木綿單物上斗壺・木綿綿入上斗壺・打帶式筋・木線帶式筋・笠式・木綿足袋壺足・さすか壺本・虎のきはか之指壺・船手形三枚・木札式枚。右は朝鮮人持渡候分何茂無違請取申候(『竹島紀事』元禄6年6月).

28) 我々兩人之内壹人者釜山浦之者アンヨクト申候、壹人ハウルサン之者バクトラヒト申者ニ而御座候、我々一艘ニ十人乗組候処内壹人相煩申ニ付寧海与申所ニ残置九人乗竹嶋ニ罷渡候。船頭キムヨチャキ・キンバタイ・キンデントイ・ウルサン之者セコチ・이하니・キムトグゾ이・チャグチャチュン(『竹島紀事』元禄6年9月4日).

타고 위 소옥에 가서 하쿠토라히를 잡아 거룻배에 태우고 소옥에 있는 보따리 하나를 취하여 타고 가려 하자, 안요구가 그곳에 가서 하쿠토라히를 상륙시킬 생각으로 거룻배에 댔는데, 재빨리 배를 내어 양인 모두 본선에 태우고 서둘러 배를 출발하여 오키노쿠니에 22일에 도착했습니다.²⁹⁾

동료들이 해상에 나가 작업하는 시간에, 박어둔 혼자서 소옥을 지킬 때, 일본인 7, 8인이 나타나 박어둔을 납치하려 했고, 안용복은 그것을 저지하려다 같이 납치당했다는 것이다. 박어둔이 소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건강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의 전력이 「병영염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염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부호적대장』의 「병영염간」이 염사에 관계된 역직이라는 것과 박어둔이 산촌 출신 「양해척」이었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 그는 해상 작업보다는 물에서 어획물을 처리하는 일에 적합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소옥에 남은 것은 「염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산촌 출신의 해척, 염사에 능한 그에 맞는 해석이다.

박어둔을 구하려다 안용복 자신도 납치당한 것은, 그가 동료의 안위를 걱정하는 책임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이었다. 박어둔의 납치를 안용복만 목격한 것인지, 다른 선원들도 목격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으나, 안용복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그의 책임자로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입증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동료들도 납치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은 『변례집요』나 『백기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일이나, 여타 동료들은 자신들의 안위에 급급했던 것 같다. 『백기지』는 두 사람이 다른 동료들처럼 도망치지 못하여 납치당한 것으로 기록했다.³⁰⁾

조선인의 송환명을 받은 돛토리한은 둘을 다음과 같이 대우했다.

돛토리를 출발하여 나가사키에 26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 곳곳에서 대접을 받았다 합니다. 상에 차리는 음식은 국 하나에 반찬 7, 8개 정도씩이었습니다. 양인 모두 탈 것을 태우고 나가사키까지 왔습니다.³¹⁾

29) 我々彼嶋ニ罷在候内小屋を掛小屋之番ニハクトラヒ与申者残置候処ニ四月十七日ニ日本船一艘參り天間ニ七八人乗候而右之小屋ニ參ハクトラヒを捕天間へ乗せ、尤小屋ニ置候平包取乗せ罷出候付アノヨグ其所ニ參断申ハクトラヒを陸江揚可申与存天間ニ乗候へハ早速船を出し兩人共ニ本船ニ乗せ早速出船仕隠岐國ニ同廿二日ニ罷着申候(『竹島紀事』元禄6年9月4日).

30) 命を得て武器を載せて至る。朝鮮人彼島の太坂浦に通る。残る者二人なり。即これを捕へ帰帆して、又官訴ふ(丙子年八月廿二日).

31) 朝鮮人式人五月七日因幡發足六月晦日長崎江到差因幡より護送之御使者松平伯耆守様御家来山田興左衛門平井甚右衛門惣人数九拾余人相附尤朝鮮人駕籠にて被相送候(『竹島紀事』元禄6年6月).取鳥發足仕長崎表江廿六日振ニ罷着申候、其間所々ニ而御馳走被仰付候、膳部

이곳의 「일즙칠팔채」는 성찬으로, 극진한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세기의 왜관은, 조선인이 왔을 경우는 별도로나 「일본인끼리의 연회는 1즙 3 채, 술 삼색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³²⁾ 일본인끼리의 연회는 국 하나에 반찬 셋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즙칠팔채」가 얼마나 성찬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규정이다. 둘에 대한 후대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가마에 태우고 의사와 요리사가 포함된 90여인이 호송했다.

이런 후대는,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 즉 돛토리한이 납치범을 처벌하고, 울릉·자산 등이 조선령이라는 관백의 서계를 쓰시마한이 탈취했다는 것, 양도에서 만난 왜인을 추방했다는 것 등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그런 후대는 막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취한 자구책이었을 수도 있다.

납치된 두 사람의 구명 활동이 『죽도기사』에 전한다. 도해금지를 조선에 요구하라는 명을 받은 쓰시마한은 어림문제를 영토문제로 왜곡시켰고, 조선은 죽도와 울릉도를 별도로 위장하여 「조선의 울릉도」, 「일본의 죽도」로 대응하다 위기에 처하자 「죽도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논리로 대응했다.³³⁾ 그런 과정에서 쓰시마한이 답서에 있는 울릉도의 삭제를 요구하자, 통사 박동지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2인은 일본에 잡히고 남은 7인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러자 잡힌 자의 부모와 처자들이 울산 지두(地頭)에게 누구누구 9인이 배를 타고 어림에 나갔습니다. 그 중 7인은 돌아왔으나 우리 남친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사하여 사실을 분명히 해주세요라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7인을 불러 조사했더니, 다음처럼 증언했습니다. 즉, 어림을 위해 울릉도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있는 일본인이 2인을 잡아 호키노쿠니로 끌고 갔습니다. 무력한 저희들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오는 곳에 어찌 가게 되었는가, 건너간 곳이 혹시 울릉도가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야말로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울릉도로) 그곳에는, 이전부터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경상도 순찰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순찰사도 (중대한 일이라며 서둘러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³⁴⁾

一汁七八菜程宛ニ而御座候、兩人共ニ乗物ニ而長崎迄罷通候(『竹島紀事』元祿6年9月4日).

32) 朝鮮人參會の時ハ格別。日本人互ニ振舞の膳部一汁三菜、酒三色の上ハ、堅ク無用たるべき事(『御壁書控』1671년), 田代和生『倭寇』(文芸春秋、平成14年、P177)再引用).

33) 雖弊邦境之鬱陵島(中略)貴境竹島(『肅宗實錄』20年2月23日).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肅宗實錄』20年8月13日)

34) 殘七人ハ無恙致歸國候、依之被逮捕候者之親女房子共方より蔚山之地頭江誰々九人乗組漁ニ罷出七人ハ罷歸候へ共我々男親ハ不罷歸候御詮儀被成被下候様ニ与妻子共訴狀差出則七人之者召寄被遂吟味候へハ為漁鬱陵嶋江參候処ニ居合日本人式人捕伯者国江召連參候付無力我々

라고, 조선의 국서에 울릉도를 기록하게 된 것은, 납치된 어민의 가족이 울산 관청에 호소하여,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도해한 곳이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숙종실록』의 내용과 달라, 처음에는 어민들이 간 곳이 일본인들이 가는 곳과 다른 곳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조선은 처음부터 일본인들이 가는 죽도가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명을 호소한 것이 누구인지 불명이나, 안용복이 부산 사람이었으므로, 박어둔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울산에 거주하는 안용복의 모친이었을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가족이 납치사실을 울산 관청에 호소하여, 경상도 순찰사가 조정에 보고하였다는 것은, 돌아온 7인이 가족에게 알렸을 뿐 관에는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청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가족이 호소하자 조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어둔의 가족이 청원한 것으로 보면, 그에게는 「親女房子共」·「男親」, 즉 「親」·「女房」·「子共」·「男親」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었다. 「親」이 부모·선조를, 「女房」이 처를, 「子共」이 자식을 의미하므로, 그에게는 부모·처·자식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男親」을 부친으로 보면 「우리들의 男親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訴狀」은 자식이 제출한 것으로, 부모와 처는 연서하지 않은 것이 된다.

(4) 『元祿覚書』

안용복은 쓰시마한의 요구가 막부의 뜻과 다르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조선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을 세우고도 2년 형을 받았다. 형기를 마친 안용복은 그 비리를 소송한다며 돛토리한으로 도해하다 오키에 표착하자, 대관소를 찾아가 도해목적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대관소는 일행의 그 요구에 응하며 일행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했는데, 그 보고서의 일부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이하 원록각서)가 2005년에 발견되었다.³⁵⁾

안용복의 일행은 승려 5인을 포함하는 11인 구성이었는데, 박어둔은 포함되지 않았다. 3년 전(1693)에는 같이 납치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박어둔은 일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3년 전에는 10인이 울산을 출발하여, 한 사람이 영해에서 하선했으나, 이번에는 출발할 때부터 11인이었다. 박어둔은 따로 도해하여

斗罷婦候由申ニ付日本人參候所江ハ如何様之儀ニ而參候哉鬱陵嶋ニ而者有之間敷与被致吟味候ヘハ曾而他所ニ而者無之以前より參候由申ニ付其旨慶尚道之巡察使江案内被申候ヘハ巡察使より被致注進候之處様子難落着候間得与遂吟味様子相極候而可申登由都より返答有之ニ付而右七人之者巡察使方江召寄詮儀被仕候處最前為申ニ無相違如何ニも鬱陵島江參候(『竹島紀事』元祿7年2月15日).

35) 權五曄·大西俊輝 註訳『元祿覚書』(제이앤씨, 2009).

죽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것을 『원록각서』는

안용복과 도라베 두 사람은 4년 전 닭 해의 여름에 죽도에서 하쿠슈의 배에 끌려 당지에 왔었다. 그 도라베가 이번에는 같이 오지 않고, 죽도에 남아있다 한다.³⁶⁾

라고 4년 전(3년 전)에 동행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박어둔이 이번에는 안용복과 동행하지 않고 죽도에 남았다고 기록했다. 별도로 행동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 안용복이 박어둔을 제외시킨 것인지, 박어둔이 참여를 거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오니시는 대마도가 취했을 「공포의 취조」에서 원인을 찾으며,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박어둔이,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국인의 취조를 받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³⁷⁾

일행이 돗토리를 방문하는 시기에 박어둔이 죽도에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따로 도해하여 죽도에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안용복이, 용무를 마치면 죽도로 돌아가 12척의 배에 짐을 싣고 귀국하여 세금을 바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을 보면,³⁸⁾ 두 사람만이 아니라, 12척으로 도해한 일행 모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병영염간」의 전력을 가진 박어둔이, 동료들이 해상작업을 하는 동안 홀로 물의 소옥에 남아 염사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그의 역할은 승선했던 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배의 일도 처리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정으로 돗토리한을 방문하는 일행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방문단에는 염사담당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모든 배에 염간이 승선하는지, 塩干 하나가 모두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어둔이 다른 배까지 책임지고 있었다면 12척의 배는 동일선단으로 보아야 한다.

박어둔은 3년 전에도 소옥에서 염간의 역할을 수행했듯이, 이번에도 그곳에 남아 어획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관계로, 방문단에 참여하지 않고 죽도에서 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같이 귀국할 계획이었을 수 있다.

안용복이 「이번에 대리고 죽도에 왔다(此度召連參竹島)」라고 말한 것은, 박어둔이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안용복의 뜻이었다는 것으로, 일행의 구성이 안용복의 뜻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이 같이 귀범할

36) 安竜福ととらへ式人四年已前西夏竹嶋ニ而伯州之舟ニ被連まいり候其とらべも此度召連參竹嶋ニ殘置申候 前掲注 35, P186.

37) 전계주 35, P189.

38) 伯州用事仕廻竹嶋江戻り十式艘之舟ニ荷物ヲ積セ改仕六七月之比歸国仕り殿江も運上ヲ上ケ申筈之由申候(前掲注 35, P196.

계획까지 밝힌 것을 보면, 그가 12척의 선단구성에도 관여했다는 것으로, 일행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5) 『伯耆志』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호키노쿠니(伯耆国)에 속한 어민이었기 때문인지 『백기지』·『백기민언기』·『백기민담기』 등에도 죽도 도해에 관한 기록이 있다. 메이지(明治)초에 가게야마 슈쿠(景山肅)가 편집한 『백기지』는 관선 지지로, 1861년에 편집했다. 돗토리한의 마쓰에 요시마사(松江布政)가 1742년에 완성한 『백기민언기』는 백기국 구메(久米)·가와무라(河村)·야바세(八橋)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이고, 『백기민담기』는 마스에가 『백기민언기』를 보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이다.

『백기지』에는 1692년의 어럽을 실패하자, 이듬해에는 무기를 싣고 도해하여 조선인을 납치한 내용의 기록이 있다. 납치된 두 사람을 「조선인」·「異人」 등으로 기록하여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납치 귀범하여 관에 호소했다. 명이 있어 도베에가 異人을 대리고 본부에 갔다. 번사 가노씨와 오제키씨가 수호했다. 異人을 에도로 불렀다 본토로 보냈다. 그 이후에 그 나라에서 죽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빈번히 말하게 되었다. 관에서 상의하여 죽도가 일본의 관내라는 지증문을 바쳤기 때문에, 이후 조선에 말긴다는 명이 있었다.³⁹⁾

두 사람을 에도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한 사실을 기록했다.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의 그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숙종실록』의 전하는 안용복의 진술과도 상응한다. 납치하는 상황의 약술은 『변례집요』의 그것과 유사하게 조선인을 회화했다. 무기를 소지한 일본인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한 둘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인과 대항하려다 붙잡혔다는 것으로도, 행동이 느려서 붙잡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무기의 탑재를 전제한 것을 보면, 후자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 동료를 구출하려다 납치당한 것으로 기록한 『죽도기사』와는 다른 내용이다.

『백기민언기』는 1692년에 조선인이 도해한 내용과 1693년에 두 조선인을 납치한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성명을 밝히지 않고 「唐人兩人」·「兩人」·「唐人」으로 표기했다.⁴⁰⁾ 『백기민담기』도 『백기민언기』와 마찬가지로 도해

39) これを捕へ帰帆して、又官に訴ふ。命有て藤兵衛異人を具して本府に至る。番士加納氏・尾関氏守護たり。異人江戸に召されて本土に送らる。後彼国より竹島は朝鮮の地たるよし、頻に言上に及ぶ。官議して日本管内たるべき旨証文を上らへ、以後朝鮮に預け給ふ可きの命あり(『伯耆志』)。

하는 조선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인지, 납치를 부득이한 일로 보았다. 막부의 허가를 받고 도해하는 요나고 어민이 조선어민을 납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록했다.⁴¹⁾

2) 岡嶋正義의 기록

(1) 『増補珍事録』

노마 소조(野間宗藏)가 편집한 것을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증보한 3권의 기록이다. 간에이8(1631년부터 교호16(1731)년까지 정리한 『진사록』을 그의 자손과 오카지마가 분세이 연간(1818~1829년)의 기록을 증보한 것으로 『인부연표』나 『인부역년대잡집』의 전거가 되었다. 내용은 겐로쿠(元禄)5년에 죽도에서 조선인을 만난 일, 6년에 조선인을 납치했다 송환한 일, 9년의 도해금지령, 요나고 어민이 11년부터 16년까지 에도에서 재 도해를 호소한 일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안용복이 진술한 두 사람의 신상과 그들이 소지했다는 호패도 있다. 유사한 내용이 『인부역년대잡집』·『죽도고』에도 있다.

안용복이 진술한 것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 동래(トクネンギ)」에 사는 43세의 통사로, 「안헨치우」라고도 칭했다. 박어둔은 울산에 사는 「하인」으로, 「도라헤」라 칭했다. 둘을 「통사」와 「하인」으로 설정한 것은, 안용복의 역직이 「통사」이고 박어둔의 역직이 「하인」인 것을 근거로 한 것 같으나 「통사」와 「하인」이 두 사람의 관계인지, 신분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명이다. 통사와 하인을 대응시켜 「통사 안용복의 하인 박어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분의 호칭이라 해도 「노비」와 동류어로 볼 수 있는 「하인」을 「통사」의 상위직으로 볼 수 없어, 통사가 하인의 상위에 위치하는 상하나 주종관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두 사람은 전복 채취를 명받았으나 장소를 지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년에 도해한 자들의 말을 듣고 죽도에 도해하여 전복 등을 채취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는 두 사람이 일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다는 것으로,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거년에도 도해했다는 것이다. 명을 내리는 상관이 있는 집단의 실체를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이 명받고 도해했다는 것은 도해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을 사실의 확인이다. 통사가 진술했다는 안용복과 박어둔의 신상기록과 그들이 소지했다는 호패는 다음과 같다.

40) 唐人兩人り連帰ルニ、米子参着、同年四月廿七日未ノ下刻、灘町大屋空九衛門宅ニ入、斯テ兩人島ノ趣、唐人召連帰帆ノ事ヲ太守ヘ訴ルニ、遂ニ武都ノ沙汰ニ泊トカヤ(『伯耆民談記』).

41) 依テ計策をなし、唐人式人を擒にして、召連て帰帆し、同年四月廿七日未ノ刻、米子ヘ着岸して、灘町大谷九左衛門宅に唐人を入置、其由言上ニ及ぶ(『伯耆民談記』).

두 조선인 중 통사의 진술

통사 이름은 안헨치우 나이 43
 주소 조선의 토쿠넨기라는 곳
 하인 이름은 도라헤
 주소 같은 울산 사람

삼계의 상관이 전복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하였으나, 어느 나라라는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온 자가 죽도에 가라고 말하였으므로, 죽도에서 미역 전복을 채취했다 한다.

위의 두 사람의 조선인의 가슴에 걸린 표찰의 문자는 좌와 같다(小子는 생 각 하건대, 샤구완은 上官일 것이다. 42)

안헨치우의 찰

동 私*ト 나이 33, 신장
 4척1촌 얼굴은 검고 약간 수염이 있으며 상처는 없다
 래 주인은 경에 사는 오충추

庚 釜山佐自川一里 焼印有
 午 第十四統 三戸

도라헤의 표찰

庚 靑良島里
 第十二統 焼印有
 午 五家

尉 30세 辛丑生 朴於屯
 山 塩干⁴³⁾

호패가 발부된 것이 진술이 이루어진 1693년 보다 3년전인 1690년의 일이었

42) 唐人式人之内通シ申口. 通シ名ハアンヘンチウ年四十三. 在所朝鮮之内トクネンギと申所. 下人, 名ハトラヘ. 在所同クウルサンの者. 三界のジャクワンより鮑取上ケ申様ニと被仰付, 伺国と申指図ハ無之由, 去年参候者竹嶋へ参候様ニと申聞候由, 竹嶋にて和布・鮑取場申由. 右之式人唐人胸ニ懸申候札之文字左之通(小子按ニ、ジャクワンハ上官ナルベシ)(『増補珍事録』元禄6年).

43) アンヘンチウ札、表之文字、東、私*ト年三十三、長四尺一寸、面鉄髭暫生疤無。萊、主京屋呉忠秋、裏之文字、庚、釜山佐自川一里、焼印有。午、第十四統三戸。トラヘ札、表之文字、庚、靑良島里第十二統、焼印有。午、五家。裏之文字、尉、三十丑、朴於屯、山、塩干(『増補珍事録』元禄6年).

던 것을 감안하면, 박어둔의 신상기록은 일치한다. 그에 비해 안용복은 본인이 진술했다는 내용과 호패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가슴에 걸고 있었다는 「안헨치우의 札」과 「도라해의 札」은 경오(1690)년에 동래와 울산에서 발부된 것으로 양식도 다르다. 안용복의 것이라는 호패의 표면에는 「私奴用卜年三十三長四尺一寸面鉄髭暫生疤無主京屋吳忠秋」로 해독하는 기록이, 이면에는 「釜山佐自川一里第十四統三號」로 해독하는 내용이 있다. 표면에는 「私*卜」이라는 성명과 「34세」의 나이, 「4척1촌」이라는 신장, 「검은 얼굴에 짧은 콧수염이 있으나 상처는 없다」는 안면의 특징,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라는 내용이 있고, 이면에는 「부산 좌자천 1리 제14통 3호」라는 거주지의 기록이 있다.

도라해의 호패의 표면에는 「청량도리 제12통 5가」, 이면에는 「30 축 박어둔 염간」으로 해독하는 기록이 있다. 「울산 청량도리 12통 5가」에 거주하는 「신축년 출생의 30세」의 「염간 박어둔」이라는 내용이다.

박어둔의 호패에는 신체의 기록은 없고 나이는 「30축」으로 했다. 호패가 발행된 경오년(1690)에 30세가 되는 신축년(1661) 출생이라는 것이다. 그곳의 「청량도리 제12통5가」·「삼십축」·「박어둔」·「염간」등이 『울산부호적대장』의 「울산부 청량면 목도리」·「연 27 신축」·「병영염간」·「박어질둔」과 상응하여 신뢰해도 될 것 같다.

박어둔의 호패와 달리 안용복의 것이라는 호패에는 문제가 많다. 안용복이 진술한 「연43」과 호패의 「연33」의 나이가 다르다. 경오(1690)년에 발부된 호패의 나이가 33세라는 것은 1658년 출생으로, 납치된 1693(계유)년에는 36세였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진술한 43세와는 7세나 차가 난다.⁴⁴⁾ 이 호패에는 나이만이 아니라 「사노용복」으로 해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4척1촌」이라는 신장도 문제이다. 「사노용복」과 「主京屋吳忠秋」를 대응하여, 안용복을 오충추의 사노로 단정하는데, 이 호패는 안용복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판독이 어려운 「私*卜」을 「私奴用卜」으로 해독하고, 안용복을 사노로 단정하나, 그것은 의문이 남는 주장이다. 「사노용복」으로 해독한다 해도 「卜」을 안용복의 「福」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사노」는 안용복이 1693년에 칭한 「비장」이나 1696년에 칭한 「삼품당상안동지」·「통정대부」등의 관명과 궤를 달리하는 신분이다.

「4척 1촌(132Cm)」이라는 신장은 너무 왜소하여, 동료를 납치하려는 왜인들에게 대항했던 안용복, 「포악」·「맹성강폭」하다며 주의하라는 경계령까

44) 안용복의 나이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많다. 『元錄覺書』에 따르면 1696년에 43세로, 1654(甲午)년 생에 해당한다. 『竹島紀事』도 1693년의 나이를 40세로 하고 因幡에서 말한 43는 언어상의 오류로 설명했다. 『竹島考』는 안용복이 진술한 42세와 호패의 36세를 같이 전한다.

지 내렸던 안용복의 신장으로 보기 어렵다. 포목상의 척도법을 근거로 185Cm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⁴⁵⁾ 그보다는 안용복과 무관한 호패로 보아야 한다. 안용복을 영토 문제의 원흉, 용자능력이 없는 문맹으로 단정한 일본인도 「신장을 4척 1촌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오사이다. 당시의 병졸의 명부를 보아도 5척(약 150Cm) 이하의 군병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의문을 표했다.⁴⁶⁾

이상과 같은 상황을 보면, 안용복의 것으로 단정된 호패는 안용복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무리하여 안용복의 호패로 보는 것은, 안용복의 진술이나 여타 기록들의 내용과 모순을 이루어, 안용복의 실체파악을 어렵게 한다. 『증보진사록』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통사와 하인으로 규정한 것의 해석부터 어렵다. 사노와 염간을 근간으로 하면 사노라는 안용복을 상위에 위치시키는 상하관계의 설정이 어려우나, 박어둔의 「염간」은 안용복의 「비장」, 「동지」, 「통정대부」 등의 하위에 위치시키면, 통사와 하인으로 설정하는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2) 『因府年表』

『인부연표』에 박어둔이 나타나는 것은 둘을 돛토리로 소환하는 5월 28일의 기록이다. 그곳에서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인」, 「이객」으로 칭하며, 「포악」하니 특히 「여자와 아이」는 주의하라는 경계령을 내린 내용이 있다.⁴⁷⁾ 그리고 6월 4일조에 안용복과 박어둔의 신상을 밝혔다. 동래인 안빈사가 42세의 통사이고, 울산 사람 도라해가 34세라는 내용이다. 『증보진사록』의 43세, 33세와는 1세의 차이가 있으나 계산의 착오일 것이다.

신문할 때 붓을 잡지 않은 것도 박어둔의 행적으로 했다.⁴⁸⁾ 박어둔이 붓을 잡지 않은 것을 특기한 것은, 동석한 안용복이 붓을 잡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다. 『죽도고』가 안용복을 소개하며 「이객이 시종 필연을 잡지 않았다」라고,⁴⁹⁾ 마치 안용복이 문맹이라 붓을 잡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과 다르다. 납치된 조선인이 붓을 잡지 않는 것을 문자 해독력과 연관시키기 보다는 저항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박어둔이 일본 측의 요구를 듣지 않고 붓을 잡지 않았다면, 기록할 능력이 없었거나, 일본 측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울산부호

45) 안기태 『안용복장군님, 고맙습니다』 (사단법인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2007년).

46) 下条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2006年、P.33.

47) 御家中ノ家来末々迄見物ニ出候トモ、猥リニ無之様堅ク可申付候。其内、女童ノ出候コトハ可為無用之旨被仰触。此度、異客ノ内暴悪ノ者有之由相聞エ候ユエナリ(『因府年表』 元禄6年5月28日).

48) トラヘ(蔚山ノ人、年三十四歳。始終筆硯ヲ不採ユエ基本字伝ト云)(『因府年表』 元禄6年6月4日).

49) 此時ノ異客始終筆硯ヲ不採ユヘ其本字不伝 (『竹島考』 大谷之船人拿婦朝鮮人) .

적대장』의 박어둔이 「병영염간」의 양해척이었고, 부가 「정병」, 조부가 「통정대부」, 증조부가 「가선대부」 등의 관직을 칭하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박어둔은 용자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안용복 일행이 1696년에 아카사키(赤崎)에 도착하자, 돗토리한은 일행을 아오야(靑谷)에 두류시키고 유학자 쓰지 반안(辻晩庵)을 보내 필담을 시켜, 도해의 목적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막부에는, 필담을 하면 소송을 접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⁵⁰⁾ 사실과 달리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영유의 정통성을 주장한 17세기의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真重)나 현대의 다가와 코조(田川孝三)·가와카마 겐조(川上健三)를 답습하는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조선인 셋을 전념사에 불러 필담하게 되었으나 한문을 알지 못하는 안용복 등한테서는 도해의 목적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한다.⁵¹⁾

(3) 『因府年表大雑集』

오카지마가가 15권으로 편집했으나, 성립연대는 불상이다. 간에이9(1632)년부터 가에이7(1854)년까지의 기록으로, 『인부연표』 등을 저술하는 과정에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도별로 珍事나 異事を 잡다하게 기록했다.

박어둔의 행적을 포함하는 기록은, 납치와 송환을 개괄한 「7월 24일조」, 통사 「안헨치우」와 하인 「도라헤」의 신분과 호패를 소개한 「5월 28일조」,⁵²⁾ 오야케 선두와 조선인의 구술서 등에 있다.

겐로쿠(元禄)5년조는 납치한 안용복과 박어둔을 나가사키에 송환한 것을 내용으로 하나, 그것은 겐로쿠6년의 일을 5년의 일로 착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편자도 오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납치한 조선인에 대한 설명은 7월 24일조에 「안동지, 도우넨기 사람으로 통사. 하인 호평, 울산 사람」으로 기록했고, 5월 28일조에도 『증보진사록』과 같은 내용,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과 호패의 내용을 기록했다. 오야케 선두가 진술한 구상서는 조선인을 납치하여 귀범한 과정의 기록이고, 「조선인 구술서」는 조선선 3척의 개요와 호패의 내용, 선적물을 내용으로 한다.

박어둔과 안용복의 신분은 『증보진사록』의 그것과 같으나, 박어둔을 「하인, 호평, 울산인」으로, 안용복은 「안동지, 동래인, 통사」라고 설명했다. 구술서의 「하인, 호평」·「하인, 이름은 도라헤」는, 호패의 「박어둔, 염간」과 동일한

50) 筆談を仕候而者訴訟之儀を受込候同前ニ御座候故、筆談不仕候旨申上候(『竹島紀事』元禄9年6月23日).

51) 下条正男『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2006,P 6 7.

52) 원문 「通シ」, 「通ジ」는 「通詞」나 「通辞」로 보아도 무방하여 「通詞」로 표기한다.

으로, 박어둔은 「호평」·「도라해」등으로 호칭되며, 「염간」·「하인」취급을 받고 있었다. 박어둔을 「도라해」로 호칭한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호평」은 「도라해」로 발음할 수 있다. 「도라」는 「虎」를 의미하고, 「해」·「헤이」는 「平」을 의미하여, 「토라해」 「토라헤이」등으로 호칭할 수 있다.

7월24일조는 소옥에 있던 두 조선인이 스스로 일본선에 탄 것으로 하고 있으나, 선두의 구상서는, 소옥에서 태운 자를 오사카우라(大坂浦)에서 상륙시키고, 다른 두 사람을 태운 것으로 했다.⁵³⁾ 그렇게 되면 소옥에 있었던 자가 박어둔이 아니었다는 것이 되나, 『죽도기사』는 박어둔이 소옥을 지킨 것으로 하고 있어, 소옥에서 태운 자는 염간 박어둔으로 보아야 한다.

안용복의 진술과 호패의 내용이 『증보진사록』의 그것과 유사한 결과를 『인부역년대잡집』은 다음처럼 언급했다.

생각하건데, 우에 기록한 것이 자세한 것은 유사하나, 아마도 개서할 때, 후에 첨가한 것이 혼효된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⁵⁴⁾

라고 편찬 과정에 자료의 혼용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두 사람의 호칭과 기명을 설명한 다음에, 자세한 것은 『죽도고』로 넘겼다. 『인부역년대잡집』과 『죽도고』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이었다.

안용복을 「안동지」·「안희산」으로 표현했으나, 관명 「안동지」는 1693년이 아니라 1696년에 호칭했다. 기록은 「唐人二人」의 「안희산」과 「도라해」를 설명하며, 불을 잡지 않아 「本字」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일 「漢字」를 의미한다면, 같이 기록한 호패에 「朴於屯」이라는 기록이 있어 모순이다. 또 그것은 「私*ト」을 「私奴用ト」으로 해독하는 것을 부정한다. 만일 「私*ト」으로 기록된 호패를 해독할 수 없었던 것, 기록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것을 「본자」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표기했다면, 편자가 그것을 안용복의 호패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두 사람을 「통사」와 「하인」으로 설정한 것은 『증보진사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인부역년대잡집』은 호패의 부분에 「이 札의 문장은 준비에 따라 精粗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주를 달아,⁵⁵⁾ 두 사람을 「준비」

53) 北浦江参見申候へハ、唐船壹艘すへ小屋かけ仕、唐人一人居申候小屋之内を見候へハ、蚰、めの葉大分取上ゲ有之二付、彼唐人に様子尋候得共、通じ二て無御座故、わけ聞へ不申候。右の唐人はし船に乗せ大てんぐと申所へ尋参り候へハ、唐人捨人斗拵仕居申候内、通じ壹人居申故、此方のはし船二乗、前に北浦二て乗せ候唐人ハ舟より上ケ、外に壹人以上式人乗せ、様子相尋候へハ、通じ申候は(『因府歴年大雑集』大谷右衛門船頭口上書覚)。

54) 案、右之載る所倭敷ニ似たれ共、恐くハ改書の時、後ニ加たるものは混淆なと云べからず(『因府歴年大雑集』元禄5年7月24日)。

로 구별하려 했다. 이 「존비」를 「통사와 하인」에 적용하면 통사 안헨치우를 「존」에, 하인 도라헤를 「비」에 위치시킨 것이 된다. 그러나 그런 질서는 「私*ト」을 「사노용복」으로 해독하며 안용복의 것으로 보는 주장과 모순이다. 호패가 「염간 박어둔」과 「사노 안용복」의 것이라면 「염간」박어둔이 「존」이고 「사노」안용복이 「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도 「私*ト」의 호패는 안용복의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박어둔의 선조가 「가선대부」, 「통정대부」, 「정병」 등의 관명을 칭했다는 점에서도 「사노 용복」으로 해독하는 호패를 소지한 자의 「비」에 위치시킬 수 없다.

호패의 내용을 기록한 곳의 하단에 다음의 주기가 있다.

생각하건대, 이 서부에는 조선인 통사의 성명을 안헨치우라고 기록했다. 달리는 안헨샤, 혹은 안히산이라고 기록한다. 안은 성, 헨치우는 이름일 것이고, 헨샤와 히산은 비장의 한음으로 관명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 앞에 기록한 것과 같으므로, 본자를 알지 못하여,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 또 도라헤札의 庚午蔚山은 庚午蔚山일 것이다. 원래 전사의 오기가 많을 것이다.⁵⁶⁾

통사 「안헨치우」를 성씨 「안」과 이름 「헨치우」로 정리하고, 조선의 관명 「비장」을 의미하는 「헨샤」와 「히산」을, 성씨에 붙여 「안헨샤」, 「안히산」으로 호칭한다는 설명이다. 이 「비장」은 「사노용복」의 「사노」와 모순을 이루어, 「私*ト」이 기입된 호패를 안용복의 것으로 단정하는데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의 진술에 의거하는 「조선인구술서」에는 도해한 3척의 배에 대한 설명과 안용복 일행의 구성과 역할, 선적물의 내용 등이 약술되어 있다. 승선원은 안헨치우·요치엔기·도쿠센기·덴쓰우엔·바타이·세호테키·야가이·이한닌, 不知人の 9인이었다.⁵⁷⁾ 그런데 이곳에는 박어둔에 상응하는 이름이 없어, 박어둔에게 「도라헤」가 아닌 다른 호칭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빠뜨렸을 가능성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부산을 떠날 때는 10인이었으나, 영해에서 하나가 내렸기 때문에, 不知의 선원을 박어둔으로 보아야 하나, 구술서를 작성하는

55) 此札ノ文尊卑ニ依テ精粗有之ヤト。愚案セラルルナリ(『因府歴年大雑集』元禄6年5月28日).

56) 按、此書付ニハ唐人通ジの姓名をアンヘンチュウと載ス、他ニハアンヒンシヤ、或ハアンヒシヤンと記す。想に、安は姓、ヘンチュウは名なるべし、ヒンシヤとヒシヤンとは俱に裨將の韓音ニシテ官名なるべきかと愚察せられ候也。但、前ニ記せるが如くなれば、本字知れざるゆへ、詳ニ弁じ難く、ヌラヘが札に庚午蔚山ハ庚午蔚山なるべし。尤伝写の誤りも多かるべし(『因府歴年大雑集』元禄6年5月28日).

57) 十人乗、船頭アンヘンチュウ、船子ヨチエンギ、所ウルサンノ者、同一人トクセンギ。同一人テンツウエン、鍛冶バタイ、大工セホテキ(중략)去年之者、一人ヤガイ、一人イハンニン、一人名不覚候(『因府歴年大雑集』朝鮮人口述書).

현장에 있는 박어둔을 부지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4) 『竹島考』

『죽도고』는 1828년에 상하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문답형식의 「혹문」에는 국익을 우선하는 사고가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 탓인지 자료의 인용과 해석도 자의적이다. 죽도도해를 재개할 수만 있다면, 조선은 어찌 되어도 좋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으며, 조선인의 도해를 방치하면 「영지를 약탈당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납치를 옹호하기도 했다.⁵⁸⁾

편자는 『인부연표』·『인부역년대잡집』·『증보진사록』 등이 전하는 조선인의 공술과 호패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안용복과 박어둔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의견을 첨부했다. 그는 자료의 「審察祥糾」를 강조했으나 실제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朝鮮人初渡來竹島」·「大谷船人挈婦朝鮮人」·「朝鮮国通使舶于本藩」 등의 장을 설치하고, 1692년에 죽도에 조선인이 도해한 일, 1693년에 조선인을 납치한 일,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일 등을 취급했다. 1692년의 조선인에 박어둔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명이고, 1696년의 방문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박어둔에 대한 언급은 납치를 내용으로 하는 「大谷船人挈婦朝鮮人」에 한정된다.

1693년 조에서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연령은 42세이다. 또 한 사람은 울산 사람으로 도라해라 한다. 연령은 34세이다」⁵⁹⁾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인부역년대잡집』이 호패 위주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안용복이 42세이고 박어둔이 34세라는 내용은, 호패의 36세, 33세와 다르다. 자료의 심찰상규를 강조한 편자가 그 차이를 간과했을 리 없다. 호패의 36세와 달리 42세로 기록한 자료를 보고 심찰상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중 필연을 잡지 않아, 그 본자를 알지 못한다. 참으로 무필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고⁶⁰⁾, 「그 정실을 알기 어렵다」라고 사실규명을 포기한 것처럼 기록했다. 붓을 잡지 않아 본자를 모른다는 것이 안용복에게 기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편자가 호패의 내용을 해독하지 못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안용복이나 박어둔은 해독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용복의 것이라는 호패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의 인정, 안용복의 호패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8) 其假ニ捨置ナバ遂ニ彼等ガ為ニ吾領地ヲ掠奪セラレシコト必然ナリ所詮コノ兩人ヲ連歸リ事ノ由備ニ
遂言上ヲ幕府ノ御裁定ヲ仰ク可ト衆議一決シテ(『前掲注 49)。

59) 年齡四十二歲ナリ是ナル者ハ蔚山ノ人ニテトラヘ与云ヘリ年齡卅四歲ナリ(前掲注 49)。

60) 尤此時ノ異客始於筆硯ヲ不採ユヘ其本字不伝実ニ舞筆ナリシコトニヤ(前掲注 49)。

박어둔의 납치상황을 『죽도고』는 다음처럼 기록했다.

선두 구로베에와 히라베에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건장한 수부 5인을 골라 도합 7인이 각주를 타고(중략) 가창 안에 조선인 하나가 전복과 미역 잎을 엄청나게 채취해 두었다. 그 까닭을 물었으나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그 조선인을 우리 배에 태우고,⁶¹⁾

라고 가창(소옥)에 남아있던 조선인의 납치상황을 기록했는데, 전복과 미역을 채취해 둔 창고에 있다가 납치되었다는 상황은 『죽도기사』가 전하는 그것과 같아, 가창에 남아있던 자는 박어둔으로 보아야 한다. 박어둔이 가창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염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동료들이 해상에서 어렵하는 시간에 물에 남아, 동료들이 채취해놓은 어채물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병영염간」 박어둔의 가계는 「가선대부」의 증조, 「통정대부」의 조, 「정병」의 부로 이어진다. 그 관명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이 패가 없는 자는 세간의 교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 40목씩 세금을 내고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안용복의 진술과 같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은 40목을 바치고 패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의 납속제도에 참여하면, 그에 상당하는 관명을 칭할 수 있었던 사회제도와 부합된다. 「노군」으로 알려진 안용복이 1693년에 「비장」을 칭하고, 3년 후에는 「동지」·「통정대부」등을 칭한 것도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이다. 박어둔이 「병영염간」 이외의 관명을 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계보의 관명들을 보면, 그도 여타 관명을 칭했을 가능성은 있다.

안용복이 납치당한 선상에서 진술한 나이가 42세였던 것에 비해, 1690년에 발행된 호패의 나이는 36세(호패가 발행된 1690년에는 33세)로 6세나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박어둔은 공술의 나이가 1693년에 34세, 호패의 나이가 1690년에 30세였으니 1693년에는 33세여야 하는데 34세로 하여 1세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울산부호적대장이 1661(辛丑)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93년에는 33세로, 호패의 나이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술의 34세는 계산의 오류로 보아야 한다.

3) 『長生竹島記』

61) 船頭黒兵衛平兵衛兩人ハ志慮ノ取極シテ壯健ノ水夫五人ヲ伴ヒ都合七人脚舟乗テ(중략)假廠ノ内ニ唐人一人居合セ鰻芽ノ葉ヲ仰山ニ捕上居ケレバ其ノ仔細イカニト問シシテケルニ言語一向ニ通ゼズ之依彼唐人ヲ此方ノ舟ニ乗シメテ(前掲注 49).

『장생죽도기』는 임진왜란 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울릉도와 독도를 중계지로 이용했다는 항간의 풍설을 바탕으로 해서, 야다 다카마사(矢田高当)가 1801년에 편찬한 것으로, 박어둔과 안용복의 일본인들과의 교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죽도에 2회 도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이상의 도해를 시사한다. 박병섭은 1694년과 1695년에 어럽을 하지 못하고 귀범했다는 기록과⁶²⁾ 안용복의 1696년의 독도인식이 확고한 것을 근거로, 울릉도와 자산도에서 왜인을 추방한 것을 1695년의 일로 추정하며, 3회의 도해를 추정했다.⁶³⁾ 그러나 도해는 3회로 한정할 수 없다. 다음 기록은 죽도는 물론 오키노시마에도 여러 차례 도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 해의 일이다. 후쿠우라항에서 2리 떨어진 니시무라(西村)에 이국선이 왔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나왔다. (중략) 작년에 후쿠우라에 장기 체류할 때 니시무라 사람들이 구경을 갔기 때문에 「안벤테후」와 「도라헤히」를 아는 자가 많았다. (중략) 후쿠우라에서도 조선인이 왔다고 놀라서 마을사람들이 해변에 나가보니, 친숙한 「안벤테후」와 「도라헤히」였다. (중략) 그때는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라며 감사의 태도를 취했다. 그 예를 취하는 모양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9배 3배를 했다. 그리고 모여든 마을사람들에게 3배를 했다. (중략) 헤어질 시간이 되어, 그들이 서둘러 이국선에 탔다. 해초를 태우는 포구의 남녀노소 모두가 해변에 나가, 말은 알지 못하면서도 이별을 슬퍼하여, 홍루가 소매를 적셨다. 조선인도 아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손을 흔들며 조선을 향하여 돌아갔다.⁶⁴⁾

라고 안용복과 박어둔이 오키 주민과 친밀히 교류한 사실을 전한다. 두 사람이 오키에 「거년」과 「익년」에 갔다는 것은 2년 연속해서 들렀다는 것으로, 「거년」에는 「후쿠우라」에 「장기간 두류」했다. 둘과 주민은, 배를 본 마을 사람들이 해변으로 뛰어나오고, 이별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친밀했다. 이런 관

62) 同七甲戌年、同八乙亥年、兩年も竹嶋江渡海仕候得共、朝鮮人大勢居申二付、獵も不仕帰帆仕候(『竹嶋之書附』元禄6年,7年, 4호).

63) 朴炳涉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P70.

64) 翌年、隠州の島後、福浦港より二里脇の西村と云ふ港へ、異国船、馳せ来たり、村中が浜へ出る。唐人も二里針の立ち違ひえおして、知らぬ所へ乗り掛け、当惑して、如何が是、福浦港は何れに差す哉と問いければ、福浦に去年、長逗留して、其の時、西村の者、見物に行く「あべんてふ」「虎へひ」なりと見知りたるもの多し、其の故に隣の功者を聞き馴れて(중략)福浦にしても唐人来たりてと、また驚き地下人、浜へ出るに馴染にの「あべんてふ」「虎へひ」なり(중략)恵みを蒙りたる事を厚く慮り、その礼儀と見へて空へ指を指して九拜をなし、次に集り居る大勢に向ひ、また三拜して(중략)いとまの時日もあらず、急ぎ異国船に打ち乗りければ、藻を焼く浦の老若男女、浜辺へ出て、言葉の分からぬ名残を惜しみ、紅涙たもとをひたす。なお唐人も名残はろかに、はらはらと涙を流し、手を揚げて朝鮮差して帰りける(『長生竹嶋記』).

계는 「장기간의 두류」가 1회 이상 반복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조선인은 「9배」·「3배」의 예를 차릴 정도의 은혜를 입었고, 마을사람들은 해변에 나가 반기고 이별을 아쉬워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

니시무라와 후쿠우라는 곳을 분기점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왕래의 해로가 험하고, 육로 역시 섬의 거리로는 원거리이고 험하여 왕래하기 어렵다. 단순히 조선인이 왔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가기에는 어려운 지리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양인이 「거년」에 후쿠우라에 「두류」한 사실을 니시무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친절하여, 한 번 만났던 이국인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또 1693년의 둘은 범죄자 취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나쁘기 마련이다. 따라서 169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환영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693년의 둘은 나가사키를 통해 송환되었기 때문에, 오키는 들리지 않아. 후쿠우라에 머문 것은, 납치당했을 때의 4일간의 두류가 전부여서, 장기간의 「두류」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4일의 두류만으로, 반기고 신뢰하는 관계가 성립되기도 어렵다. 그 교류가 전부였다면, 도민들은 그렇게 반기며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환영하고 이별을 슬퍼했다는 것은, 두 조선인과 도민 간에 그럴만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거년」에 이어 도해한 시기이다. 1693년은 귀로가 달랐고, 94년과 95년은 안용복의 2년 형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으며, 96년의 일행에는 박어둔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인이 「거년」에 이어 도해한 것은 1693년부터 1696년을 제외한 시기여야 한다. 그것도 연속해서 동행하는 도해였기 때문에 추정 가능한 시기는 1692년 이전이나 1697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4. 結論

박어둔과 안용복이 같이 납치되었음에도 기록은 안용복 중심으로, 박어둔의 기록은 부수적이다. 일본에서의 행적은 일본어 능력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선의 기록도 안용복 중심이라는 것은, 안용복이 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박어둔을 구출하려다 납치당한 일이나 쓰시마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보면 안용복이 적극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변례집요』와 『죽도기사』에는 박어둔과 그 가족들의 진술과 행적에 근거하는 기록이 있다.

안용복의 신상은 크게 『죽도고』가 안용복의 것으로 해서 전하는 호패와 안용복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가 전하는 내용이 달

라, 호패는 안용복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박어둔의 호패는 구술서는 물론 울산부호적대장과도 일치한다.

호적이 전하는 박어둔은 1661년에 대대면에서 정병 박기산의 아들로 태어나 울산부 청량면 목도리로 이주한 양해척으로, 병영염간의 경력을 가지고 노비 천시금과 혼인했다. 그의 선조들이 「통정대부」, 「가선대부」 등을 칭한 것을 보면 박어둔도, 안용복이 「비장」, 「통정대부」, 「동지」 등을 칭한 것처럼 다른 관명을 칭했을 수도 있다.

『변례집요』와 『백기지』가 전하는 납치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다. 『변례집요』는 하선이 늦어 납치된 것으로, 『백기지』는 도망치지 못하여 납치된 것으로 했다. 무위에 당당한 일본어민에 비해 도망치지 못하여 붙잡힌 나약한 조선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죽도기사』와 『죽도고』의 기술내용은 그것과 다르다.

『죽도기사』는 소옥에서 납치당하는 박어둔을 구하려다 안용복도 납치당한 것으로 하고, 『죽도고』도 창고에서 납치당한 내용을 전하여, 박어둔이 납치당하기 전에 소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옥을 지킨다는 것은 그곳에서 동료들의 어채물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이 병영염간의 경력을 가진 박어둔에게 부합하는 역할이었다.

양해척의 병영염간 박어둔은 산촌에서 해변으로 이주한 자로, 해상작업보다는 어채물의 염사와 같은 일에 적합한 어민으로 여겨진다. 어민들이 죽도에 도해하여 어려움을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므로, 어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처리하여 상품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어획물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염사는 빠뜨릴 수 없는 중대사였다.

동료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박어둔을 구하려다 납치당할 정도로 박어둔과 안용복은 신뢰하는 관계였다. 그런데도 3년 후에 두 사람이 따로 도해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관계나 역할분담에서 찾을 수 있다. 소송할 목적으로 도일하는 배에는 염사가 필요 없어, 죽도에서 염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박어둔이 따로 도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용복이 오키에서, 용무를 마치면 죽도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귀국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보면, 두 사람의 별도도해는 계획된 일로 보아야 한다. 박어둔은 염간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배로 도해하여, 안용복이 돛토리한을 방문한 기간에도 죽도에서 염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용복 일행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통사」 안용복과 「하인」 박어둔으로 구별되기도 하나,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연령에 의한 구별인지, 언어 능력에 의한 구별인지, 직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안용복이 주도적이었던 것은 사실로, 박어둔은 신중했거나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후세에 이르면 안용

복은 영웅호걸로 칭송되는 것에 비해 박어둔은 회자되는 일이 없어, 안용복만큼 평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어둔과 안용복이 수군의 경력을 공유하고, 오키 주민들과 친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도해는, 어럽만을 위한 도해가 아니었을 수 있다. 1696년의 일행에 승려 다섯이 포함된 사실도 그런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승려를 포함하는 11인의 일행이 죽도에 2개월이나 두류했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른 일행은 어럽에 관계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승려들이 수행한 역할은 추정되지 않는다. 오니시가 언급하는, 동해안을 거점으로 하는 해상유통업을 상징하는 것 정도가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찰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승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행에 참여한 승려들을 통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무역 같은 것도 상정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金昌集·趙泰耆·崔錫恒·李光佐『肅宗實錄』(英祖4年·1728年).
申景濬『疆界考』(英祖32年·1756年)
朴容大外『增補文獻備考』(光武7年·1903年)
徐采輔·沈象奎『萬機要覽』(純祖 8年·1808年)
李瀾『星湖僊說』(英祖朝)
禮曹典客司『邊例集要』(國史編纂委員會,1984)
越常右衛門·大浦陸右衛門『竹島紀事』(對馬藩,1726年·享保11年)
岡嶋正義『因府年表』(天保13年·1842年,岡嶋正義家資料)
岡嶋正義『因府歷年大雉集』(天保頃,岡嶋正義家資料)
岡嶋正義『增補珍事錄』(文政年間·1818~1830年,岡嶋正義家資料)
岡嶋正義『竹島考』(文政11年·1828年,岡嶋正義家資料)
大谷勝意『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文政年間·鳥取藩政資料)
鳥取藩家老『控帳』(承応4年~明治6年·1655~1873,鳥取藩政資料)
鳥取藩江戸藩邸御用人『御用人日記』(寛文10年~天明7年·1670年~1779年)
山本清右衛門『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隱岐代官所,1696年)
權五曄·大西俊輝주석『元禄覺書』(2008,제이앤씨)
權五曄『控帳』(2010, 冊舍廊)
權靜『御用人日記』(2010,선인)
田代和生『倭寇』(文芸春秋,2002年·平成14)
松岡布政『伯耆民談記』(寛保2年·1742이후, 鳥取藩政資料)
矢田高当高堂『長生竹島記』(島根県竹島關聯資料,亨和원년·1801年)

要 旨

朴於屯は安竜福と共に日本に拉致されて送還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全ての記録は安竜福が中心となっており朴於屯に関する記録は少ない。ところで最近、朴於屯の戸籍が発見され、その身分の一部が明らかになった。彼は1661年に良人朴己の子として生まれ、奴婢千時今と結婚した。彼が兵営塩干の良海尺であったことを勘案すると、水軍の櫓軍であった安竜福のように水軍の経歴を持ち、それを生かして鬱陵島へ渡海して拉致され、1696年にも再度渡海したと思われる。

朴於屯に関する記録は朝鮮よりは日本に多い。彼が供述したという内容と「号牌」の来録などである。1690年に蔚山で発行したという「号牌」は戸籍の内容と同じで、青良 目島里に居住する30歳の人物で1661年生まれであった。1690年に30歳であることから1693年には33歳であったはずだが『竹島考』での供述では34歳になっている。計算方法の差であろう。

朴於屯は拉致された1693年には安竜福と同行したが、訴訟の目的で渡海した1696年の一行に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鬱陵島まで渡海しているながら、5人の僧侶を含む一行に入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当時の朝鮮人が多様な形で渡海し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また朴於屯の意思であるか、そうでなければ除外された結果であろう。

朴於屯と安竜福は船頭と下人の関係と説明されることもあるが、朴於屯が安竜福に守護されていたことは事実である。小屋番として勤めていた朴於屯が拉致される危機に見舞われた時、それを阻止しようとした安竜福も共に拉致されたことからそれが分かる。

その朴於屯が鳥取行きの一行に含まれていないのは安竜福が除外した可能性と、朴於屯が参加を断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前者ならばそれなりのわけがあったであろう。拉致された彼が日本の審問に反論する安竜福の主張に同調することより、日本の期待に沿って振舞ったり陳述するなどして日本に正統性を与えていたならば、除外された可能性もある。また彼が目島里に移住する前に居住した大堡里が山村であって、海尺になったとしても海の仕事に慣れていないので除外した可能性もある。彼が鬱陵島で小屋番として勤めていたのもその故だったかも知れない。つまり漁労に向いていないので小屋で勤めながら後始末などをしたのであろう。

尤も「塩干」であった彼は漁獲物に対し塩漬け作業などをするために渡海の一行に参加していたかも知れない。朴於屯が水軍の経歴者で、隠岐住民と親しい関係であったことを想起するなら、獵のみを目的にした渡海ではなかった可能性もある。安竜福一行が鬱陵島に約2か月も逗留してから鳥取に赴いたが、その間の行跡が不明である。僧侶を含む一行が何をしながら過ごしていたのかも疑問として残る。朴於屯の場合は「塩干」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のであろう。このような点から東海を拠点にする国際的な海上流通業の存在を想定し得る。

キーワード： 朴於屯 安龍福 兵營塩干 号牌 竹島渡海 拉致 鳥取 米子
蔚山 目島里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